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나23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나230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가단506376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피고, 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준

변론 종결 2024. 9. 5.

판결 선고 2024. 10. 3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가단5063761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7 지분에 관하여 2022. 12. 29.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 B은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22. 12. 30. 접수 제542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1) 피고 C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제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7 지분에 관하여 2022. 12. 29.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 C은 D에게 별지 목록 제5항, 제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22. 12. 30. 접수 제542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당초 제1심에서는 원상회복의 방법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7항 내지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을, 별지 목록 기재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가액배상을 각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서 별지 목록 기재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도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의 바향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바. 이 사건 제1, 3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 이전 경로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경로되어 있던 L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2022. 5. 20.에, 그리고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에 경로되어 있던 M조합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2019. 6. 24.에 각 완제되었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2. 12. 30.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5줄부터 3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이천시장, K,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AD은행, M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 및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범위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 18.까지 산정할 때 합계 102,111,350원(=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91,180,140원 + 지급명령에 따른 10,931,210원)에 이른다.

나. 사해행위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협의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시가 합계 53,223,800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 및 지급명령상의 채무 외에 체납한 세금 합계 334,895,630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이 체납한 위 조세채무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어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우선 공제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는데, 이는 부동산의 시가 중 그 피담보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인바, 사해행위 성립시 제외되는 이러한 담보권은 당해 부동산 자체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고 이와 달리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그 부동산에 가압류나 압류를 해 둠으로써 집행절차에서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참조), 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가압류나 압류등기를 마쳤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사해의사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협의 당시 그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들은 이 사건 협의가 D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1) 이 사건 제2, 7 내지 12 부동산 이 사건 제2, 7 내지 12 부동산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3/7 부분을 포기하고 이를 이 사건 혐의로 피고 B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경우, 이에 대한 원상회복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중 D의 상속지분인 3/7 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이행하는 원물반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사건 제1, 3 내지 6 부동산 이 사건 제1, 3 내지 6 부동산의 경우, 비록 이 사건 협의 이후에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는 하였으나, 위 협의가 있기 이전에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던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위 협의 당시에 이미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3/7 부분을 포기하고 이를 이 사건 혐의로 피고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경우, 이에 대한 원상회복 또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중 D의 상속지분인 3/7 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이행하는 원물반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 B과 D 사이에 이 사건 제1 내지 4, 7 내지 12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원물반환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3/7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C과 D 사이에 이 사건 제5, 6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원물반환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3/7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충정

판사지상목

판사박평균

별지